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9.6.13.(목) 11:30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4일

3. 제안 이유

○ 불안정한 대·내외적 통상환경에 종합적·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단행된 도 조직개편('19. 1. 10일자)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사항임.

※ 조직개편 : 농식품유통과(농식품수출팀) ⇨ 국제통상과(농식품수출팀)

4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변경(안 제명)

(현행)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⇒

(개정)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

나.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관 범위 개정(안 제12조제2항)

- 충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관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당연직 위원의 범위 개정(안 제12조제3항)

- 충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.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지난 1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